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원현호
전화 041-840-4200 / 팩스 041-840-4555

보도자료

2022. 1. 21.(금)

제목 「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사건」 수형자 3명 살인죄 등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
-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(지청장 권성희)은, '21. 12. 21.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, 같은 방 수형자인 주범 A를 살인죄 등으로, 공범 B, C를 살인방조죄 등으로 각각 기소하였음
-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고, 송치 후 피고인 및 관련자 조사, 추가 압수수색, 법의학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였음

1 피고인

- 피고인 : A○○(26세), B○○(27세), C○○(19세)

2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- 살인 및 살인방조
 - '21. 12. 21. 21:25경 A○○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가슴과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**【살인】**
 - B○○, C○○는 위와 같은 A○○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, 번갈아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A○○의 살인을 용이하게 하여 **【살인방조】**

● 피고인 A○○의 단독 범행

- '21. 10. 중순경~ 12 21.경 주먹,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려 **【폭행】**
- '21. 12 8.경~12 중순경 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, 복부를 때려 **【특수폭행】**
- '21. 12. 18.경 샤프연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**【특수상해】**
- '21. 12. 14.경~ 12. 21.경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젖꼭지, 성기 부위를 잡고 비틀어 **【강제추행치상】**

● 피고인 B○○의 단독 범행

- '21. 12.경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**【폭행】**

● 피고인 C○○의 단독 범행

- '21. 12.경 7회에 걸쳐 손, 약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, 발목 등을 때려 **【폭행】**
- '21. 12. 중순경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의 정수리에 올려놓아 머리 부위의 화상을 가하여 **【상해】**

3 수사 경과

- '21. 12. 21. 피해자 사망
- '22. 1. 11. 공주교도소, 사건 송치
- '22. 1. 11.~ 20. 검찰 보완수사(피고인·관련자 조사, 법의학 자문 등)
- '22. 1. 21. 살인죄, 살인방조죄 등으로 기소

※ A○○ 공갈은 증거불충분하여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

4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,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명확히 밝히고, A○○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A○○를 살인죄로, 이를 묵인·방조한 B○○, C○○를 살인방조죄로 각각 기소
-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 ☐